

第13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查報告書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3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5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7面
5. 2003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 區有財産管理計劃 變更計劃(案) 結果報告書	11面
6.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結果報告書	14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道路占用許可및占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6面
8. 2003年度 第3回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審查報告書	
가. 市民行政委員會	18面
나. 財務建設委員會	20面
9. 2004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審查報告書	
가. 運營委員會	24面
나. 市民行政委員會	26面
다. 財務建設委員會	28面
10. 2003年度 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45面
11. 2003年度 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50面
12. 2003年度 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65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03 . 12 . 1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2월 12일 · 나승혁 의원 회 7인

나.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3. 12. 16)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나승혁 의원)

가.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 의원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목적 외 사용 등 악용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사전예방 및 위·변조가 용이한 현재의 인쇄지류를 신분증을 보완이 강화된 플라스틱류의 재질과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도록 신분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안 제3조제1항 중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그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으로 개정
(안 별표)

○안 제3조제2항 삭제

다.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생략)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